

# 『의성교육지원청과 의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서

의성교육지원청과 의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야구협회”이라 함은 본 협약 당사자인 “의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를 말한다.

## 제2조 (협약의 목적)

제1항 야구종목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야구(티볼, 소프트볼, 야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제2항 상호 협력 체제 통하여 의성교육지원청과 야구협회간의 발전적인 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제3항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며, 야구 유망주의 조기 발굴 기회를 습득한다.

제4항 청소년들의 화합과 바른 정신함양, 체력증진을 위한다

## 제3조 (협약의 내용)

제1항 의성교육지원청에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인 티볼, 소프트볼, 야구 경기에 대하여 야구협회는 의성생활체육야구장의 사용 및 심판원을 지원한다.

제2항 의성교육지원청은 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야구(티볼, 소프트볼, 야구) 대회에 협조 한다.

## 제4조 (협약의 의무)

의성교육지원청은 야구협회와 제3조의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고 수행한다.

## 제5조 (기간)

본 협약은 제3조의 협약 내용과 제4조의 협약의 의무에 변동이 없는 한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씩 연장한다

#### 제6조 (변경.해지)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본 협약서 상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의성교육지원청은 야구협회와 상호 합의 하에 본 협약을 수정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제7조 (통지 및 통보)

본 협약의 내용을 수정, 해지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야구협회장이 상호 유·무선을 통하여 연락하고, 각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실무자가 협의하며 협의된 내용은 공문서로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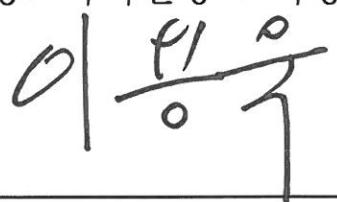
#### 제8조 (기타)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교육지원청과 야구협회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용에 관계없이 본 협약의 다른 내용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업무상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업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용 육



의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장  
김 상 창

